

청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4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1481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435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홍종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나리, 강동관

변론종결 2020. 6. 26.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2,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5.3%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2018. 10. 31. 12:45경 원고의 E은행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나. 피고는 ‘G’라는 코인 취급 대행업체에서 일한다는 자칭 ‘H’으로부터 “피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의 ID를 G에 대여하면, G가 피고의 ID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한 후 투자자가 원하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투자자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투자금의 3%의 수수료(I과 J의 경우 투자금의 6% 이상)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계좌번호, 자신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주)에 개설한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H’에게 알려주었고, ‘H’은 2018. 10. 31. 12:47경 피고에게 투자자가 4,7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4,650만 원을 위 (주)의 피고 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2:51경 위 (주)의 피고 계정으로 4,650만 원을 이체하였고, ‘H’에게 OTP번호를 알려주었다. ‘H’은 원고가 알려 준 ID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6경 (주)의 피고 계정에 로그인한 후 비트코인 6,471BTC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자 미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현금 이체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H’에게 알렸는데, ‘H’은 같은 날 14:37경까지 “뭔가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정상처리해주겠다”고 하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체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 중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었고 구매한 비트코인은 ‘H’에 의해 소유자 미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돈 중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원고와 다른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이체로 인한 이득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높은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적어도 최소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H’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H’이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H’의 편취행위를 알면서 또는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H’의 편취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을 ‘H’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행위를 할 당시 그 행위가 ‘H’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G는 국내외 모든 코인을 취급하는 대행업체로서 작년 규제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코인을 구매 가능했으나 올초부터는 법안이 통과되어 계정 레벨마다 차등 코인구매량이 제한되었고, 계정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G에 거래대행을 한다”는 ‘H’의 기망행위에 속아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J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H’의 말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게 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하려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하게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범죄자금이라는 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고 암호화폐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불법성에 대하여 다소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성에 관한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여 사기 범행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기 전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는 행위, 암호화폐를 대신하여 구매해주는 행위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세금문제가 있는지를 걱정하여 ‘H’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H’은 “투자자(실입금자) 실명으로 입금되기에 문제 발생 없다.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세금부과가 안되고 현재 현행법도 없다. 또한 투자자의 개인정보도 모두 공개해준다.”는 등의 설명과 함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를 안심시켰다.

다) 피고는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H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처럼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당시까지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조직원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빌린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인출하는 방식의 범행은 아직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를 고발하였으나 수도권단 보통군사법원은 2019. 4. 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